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7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 허은아·김영식·박대수

백종헌 · 김기현 · 임이자

한무경 • 추경호 • 황보승희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⑨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① 제9항에 따른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 터 5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
	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
	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2
	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만
	료 후 계속하여 개인위치정보
	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u>한다.</u>
<u> <신 설></u>	⑩ 방송통신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3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① 제9항에 따른 재허가에 관
	하여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u> 준용한다.</u>